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91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령, 고준승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2. 9.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2. 9. 21. 접수 제782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D은행, E은행, F카드와 사이에 카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원금 15,573,027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채권은 위 금융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양도되었다가, 최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5968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7. 9. 28. 'C는 원고에게 15,573,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 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7. 12.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I, J, K, C, L이 있었다. L은 2022. 8.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 M이 있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과 L의 상속인(피고, I, J, K, C, M)은 2022.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2. 9. 21. 접수 제78264호로 2017.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N기관의정부시청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거주하던 곳이라 명의를 이전받은 것이고 피고의 채무에 대해서 물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2. 9. 21. 접수 제782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부동산 목록

1. 의정부시 O 대 139.3㎡

2. 의정부시 O 지상

연와조 경량판넬조, 스라브 및 칼라쉬트지붕 3층 주택

1층 66.19㎡

2층 64.99㎡

3층 44.82㎡

지층 64.99㎡, 꺾.

